

대법원 판결 이후의 동성 결혼: Obergefell v. Hodges

이 결정은 내가 거주하는 주 (State) 안에서의 결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모든 주들은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주에서 행한 결혼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해야 한다. 주들은 혼인한 자들에게 부여하는 법적 혜택들을 그들의 성별에 기초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결혼식을 집례하는 성직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대법원은 종교인들 및 종교 기관들이 충심으로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들을 가르치고 행사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직자가 충심으로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들에 반하는 두 사람 사이의 결혼식을 집례하도록 주가 성직자에게 강요할 수 없을 것이라 추정한다. 미국 장로교 규례서 W-4.9000에 의하면, 성직자는 결혼 계약을 기록하는 민사 관할권의 대리역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의무 규정은 아님). 우리 헌법의 그 어느 것도 교역 장로 (목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신의 분별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반한다고 믿는 결혼식을 그 교역장로에게 집례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 결정은 개체 교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들은 그들이 충심으로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들에 반하는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규정될 것인가?

이 소송은 개체 교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떤 지역 사회들에서는, 교회 건물이 지역 사회에 의해 “공공 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그 교회가 허락하면, 그 건물은 “공공 시설”로서 주 (state)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차별 금지법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어떤 건물의 사용이라도 반드시 당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분명히 하고 있고, 건물 사용에 관한 계시된 지침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예배 공간은 사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주나 지방의 “공공시설” 법률에 의해 지배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은 변할 수 있는 (fluid)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 사용과 관련하여 염려가 있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위치한 주의 변호사들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결혼식과 관련하여 교회 부지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당회에 있다. 우리 헌법의 그 어느 것도 당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의 분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반한다고 믿는 결혼식을 위해 교회 부지의 사용을 인가하라고 당회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동성 결혼식을 위한 교회 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임 혹은 임시 목사가 당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목사는 교회 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당회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당회는 목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신의 분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반한다고 믿는 결혼식을 그 목사에게 집례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는 교회 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당회의 분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회의

이해에 반하는 것을 당회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당회와 목사 사이의 지속적인 불일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회중 사역으로 특정한 부름을 받은 목사의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동성 결혼을 위해 건물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정이 우리 교회의 세금 면제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소송은 교회의 세금 면제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금 면제 상태는 개체 교회의 정책 및 절차들이 그들이 충심으로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한 건물 사용에 관한 어떤 결정에 의해서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